



MINI Market Report

국가	호주
제품	교막통조림, 교막다시다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호주 마케팅 방안	1
1. 호주 시장 특징	1
2. 호주 시장 진출 TIP	2
II. 호주 시장 정보	4
1. 꼬막통조림 수입추이	4
2. 꼬막다시다 수입추이	4
III. 호주 가격 정보	6
1. 호주 조개통조림 가격동향	6
2. 호주 조미료(다시다) 가격동향	7
IV. 호주 유통 정보	9
1. 호주 유통 산업 특성	9
2. 호주 유통 트렌드	10
V. 호주 통관 정보	12
1. 관세 현황	12
2. 통관 거부사례	13
3. 통관 유의사항 및 절차	14
4. 원산지 규정	16
VI. 호주 검역 정보	18
VII. 호주 라벨링 정보	23
VIII. 호주 바이어 정보	26

※ 참고자료

※ 조사 개요 및 일정 ※

1. 조사 개요

- 조사 국가 : 호주
- 조사제품 : 꼬막 통조림, 꼬막다시다
- 조사 항목 : 총 8항목
 - 시장동향, 가격동향, 유통동향
 - 통관정보, 검역정보, 라벨링 및 식품 첨가물
 - 바이어 발굴
 - 마케팅 방안

2. 조사 일정

STEP	내용	완료일
조사 신청	- 미니조사 신청서 접수	7월 11일
조사 착수	- 조사국가/제품/항목 확인, 조사 담당자 배정	7월 12일
1차 정보수집	- 호주 시장 국내외 정보 수집	7월 24일
중간 보고	- 호주 미니조사 중간보고서 작성	7월 25일
2차 정보 수집	- 호주 정보 보강 작업	9월 4일
최종 보고	-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송부	9월 5일

호주 마케팅 방안

1. 호주 시장 특징

- 호주는 농산물, 육류, 와인, 수출대국이지만 다른 식품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임
 - 여러 민족으로 이뤄진 이민국가의 특성상 다양한 식문화가 존재하며, 특히 아시아 이민자의 증가로 아시아 식품 수입이 확대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
 - 주요 수입품은 식품·음료, 식료품, 신선식품 등으로 식료품이 가장 비중이 높음
 - 주요 수입국가에는 미국, 뉴질랜드, 독일, 영국 등이 있으며 아직 한국산 식품은 수입량이 많이 않은 편임
 - 호주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식품의 대다수는 주로 현지 한국 교민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제과·음료수, 기타 식품류가 대부분이며, 한국 교민·유학생은 물론 아시아 인구 증가로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
 - 호주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라면·스낵 등 한국 식품이 판매되고 있음
- 호주의 검역 및 라벨 기준 등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정 매우 까다로운 편임
 - 호주 검역청은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농수산물의 검역·통관을 총괄하며, 홈페이지(www.aqis.gov.au)에 주요 품목별 반입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별 수입품목에 대한 상세 검색은 'www.aqis.gov.au/icon' 에서 가능. 호주 식품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나 수입업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함
 - 반입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검역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반송 혹은 폐기 처리될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함

- 호주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서 관장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해당 사이트(www.foodstandard.gov.au)에서 기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곧 더 상세하고 정확한 영문 표기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
- 또한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이 제시하는 사항 중 하나는 제품에 들어가는 영양 분석표가 1회분 섭취량과 100g(액체는 100ml)을 기준으로 각각 명시돼야 함
- 식품 성분표는 많은 양부터 표시하며, 각 성분의 함유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제품명은 함유된 성분을 근거로 명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단순히 요구르트가 아닌 '과일이 함유된 요구르트' 혹은 '과일 향이 첨가 된 요구르트'라고 표기돼야 함
-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 소비자가 회수 요청을 할 수 있는 호주 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주소가 명시돼야 함
- 알레르기 유발자, 특히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고문이 포함돼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www.allergyfacts.org.au)에서 확인 가능

2. 호주 시장 진출 전략 TIP

□ 꼬막 관련 제품 진입 회의적

- 컨택을 진행했던 호주 바이어 중 한명인 Australian Seafood Producers에 따르면, 꼬막 관련 제품은 호주 시장에 많이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현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침언하였음

□ 한국산 식품에 대한 규제 엄격한 편

- 2011년부터 호주 검역청(AQIS)의 한국산 수입 식품 검역이 많이 엄격해졌음. 수입산 한국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는 호주의 한국 구제역 사태 대응 차원의 무작위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한 한국 식품 수입업체의 냉동 만두 제품이 발단이

된 것으로 통상 하역 부두에서는 서류 검사를 중심으로 검역과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사태로 수입된 한국 식품 대부분이 AQIS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에서 검역을 받게끔 되었음

- 최근에는 그 정도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호주 검역청 홈페이지(www.daff.gov.au/aquis) 를 보면 별도의 섹션(Importing Korean Food)을 두어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제품을 수입 하는 업체들에 대해 확실하게 수입 조건을 숙지하도록 경고하고 있음

II 호주 시장 정보

1. 꼬막통조림 수입추이

- 꼬막통조림은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으로 분류되며 가장 근접한 HS CODE는 「1605.56.1010 (새조개)」로 파악되었음

< HS CODE >

1605.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56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1605.56」에 대한 호주의 수입은 미미한 편으로, <http://www.gtis.com/gta/>에 통계수치가 없음

2. 꼬막다시다 수입추이

- 꼬막통조림은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으로 분류되며 가장 근접한 HS CODE는 「2103.90.9030 (혼합조미료)」로 파악되었음

< HS CODE >

2103.00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90	기타
2103.90.9030	혼합조미료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2103.90」에 대한 호주의 수입 추이

- 호주는 2013년 2억 7,327만 7,887 달러 규모의 기타 혼합조미료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 태국, 미국, 홍콩 등이 있음
- 호주의 기타조미료류 최대 수입국은 뉴질랜드로, 2013년 뉴질랜드로부터 5,376만 8,462

달러 규모의 기타 혼합조미료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36% 증가한 수치임

- 뉴질랜드에 이어 태국에서 4,223만 4,951 달러, 미국에서 3,788만 8,544달러 규모의 기타 혼합조미료류 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호주는 2013년에 한국으로부터 320만 343 달러 규모의 기타 혼합조미료류 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56% 증가한 수치임

< 호주 기타 혼합조미료류 수입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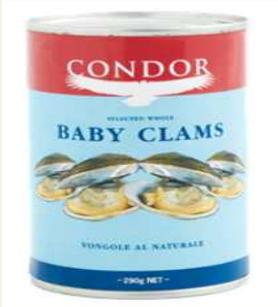
Commodity: 210390,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Nesoi;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s						
Ranking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Share		% Change
		2012	2013	2012	2013	2013/2012
1	World	260,278,561	273,277,887	100.00	100.00	4.99
2	New Zealand	49,619,116	53,768,462	19.06	19.68	8.36
3	Thailand	37,622,533	42,234,951	14.45	15.45	12.26
4	United States	33,934,811	37,888,544	13.04	13.86	11.65
5	Hong Kong	17,309,170	17,484,943	6.65	6.40	1.02
6	United Kingdom	17,686,433	15,902,476	6.80	5.82	-10.09
7	China	16,050,037	14,672,694	6.17	5.37	-8.58
8	Italy	13,782,840	14,469,988	5.30	5.29	4.99
9	Malaysia	15,068,627	13,900,045	5.79	5.09	-7.76
10	Japan	13,921,749	12,546,405	5.35	4.59	-9.88
∴	∴	∴	∴	∴	∴	∴
15	Korea, South	2,868,823	3,200,343	1.10	1.10	11.56

출처: <http://www.gtis.com/gta/>

III 호주 가격 정보

1. 호주 조개통조림 가격동향

- 「deli2home」社 온라인매장 조개통조림 가격 현황
 - 현재 호주 마트에서는 꼬막통조림이 활발하게 유통되지 않은 상황이며, 세계적인 e 커머스 전문업체인 중국 알리바바에서 수입산 꼬막 통조림이 판매되고 있음
 - 현재 호주 알리바바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꼬막통조림은 수량과 가격을 공급자에게 문의할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하며, 떡조개도 통조림형태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음

업체명	Parsons
제품명	Condor - Clams Baby Whole
원산지	호주
제품 이미지	
제품정보	바로 섭취할 수 있으며 파스타 등 요리에도 잘 어울림
가격	AUD 1.99 (290g)

출처 : <http://www.deli2home.com/>

2. 호주 조미료(다시다) 가격동향

□ 「Coles」社 온라인매장 조미료 가격 현황

- 호주에서는 현재 꼬막 및 조개류로 제조된 다시다가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다양한 재료를 원료로 한 조미료들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업체명	Chef's Choice	
제품명	Organic Sicilian Style Seafood Seasoning	
원산지	-	
제품 이미지		
제품정보	-	
가격	AUD 7.69 (120g)	

출처 : <http://shop.coles.com.au/>, <http://www2.woolworthsonline.com.au/>

□ 「Woolworths」社 온라인매장 조미료 가격 현황

- 「Woolworth」社는 호주의 대형 유통 마켓으로 온라인에서 여러 조미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Masterfoods」社의 조미료 제품이 주를 이룸

업체명	Masterfoods	Masterfoods
제품명	Garlic Salt	All Purpose Seasoning
원산지	-	-

<p>제품 이미지</p>		
<p>제품정보</p>	<p>-</p>	<p>-</p>
<p>가격</p>	<p>AUD 3.17 (210g)</p>	<p>AUD 5.75 (200g)</p>

출처 : <http://www2.woolworthsonline.com.au/>

IV 호주 유통 정보

1. 호주 유통 산업 특성

- 호주의 유통산업은 1999년 이후 매년 8%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주 총 GDP중 23%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호주의 유통시장은 약 84,000여개의 업체들이 영업 중이나 「WestField」, 「Coles Myer」, 「Woolworth」, 「David Jones」社 등 대형 유통그룹들이 전체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호주는 각 Community별로 1개씩의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유일한 쇼핑공간으로 이들 기업들과의 거래 없이 소매시장에 진출하기란 매우 어려움
-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요 특성
 - 높은 유통마진 및 관리비용
 - 호주 유통산업은 품목 및 업종에 따라 크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분야는 20~25% 정도이고, 할인백화점에서 의류 및 일반잡화의 유통마진은 35~45% 정도이나, 고급 백화점에서는 100% 이상에 달함
 - 국가별 Buying Agent를 통한 구매추진
 - 호주의 대형 유통기업들은 주요 공급국별로 자체 Buying Agent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물품을 직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해외 Buying Agent는 신규업체 발굴, 샘플테스트, 가격협상, 품질검사 등 거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호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업체들은 유통업체들을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주요국의 Buying Agent를 직접 접촉,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동일 유통그룹 내 자회사 별도 구매부서 운영
 - 대형 유통그룹들은 통상 10개 이상의 카테고리별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편이나, 그룹차원의 일괄 구매보다는 각 계열사별 자체수요에 따라 별도의 구매부

서를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그룹 내 1개 기업에 납품거래가 실패했다라도 다른 개별 구매부서에 접촉하여 거래를 성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소량주문 수입

- 광활한 국토에 비해 적은 인구로 시장이 협소한 편으로 1회 주문 시 소량인 경우가 많음

- 표준 라벨링 규정 준수

- 호주 연방 및 주정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 및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내포장에도 품목별로 다양한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전 사전지식이 반드시 필요함

- 호주는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나, 성공적으로 유통업체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에 따르면, 일단 거래가 시작돼 파트너와의 신뢰가 쌓이면 좀처럼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2. 호주 유통 트렌드

□ 호주 PB 시장 급성장

- 「IBIS World」의 보고에 따르면 호주의 소매 슈퍼마켓 유통시장의 경제규모는 2010년 기준 약 708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규모로, 이중 PL 제품이 약 25%를 차지하였으며, 2004~2006년 약 644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서 2009~2010년 약 708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성장

- 2001년 1월 독일 유통업체인 「Aldi」社가 호주에 진출하였으며, PL 제품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호주의 대형 슈퍼마켓인 「Coles」, 「Woolworths」社 등도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PB 제품 판매 경쟁에 참여

- 「Aldi」社는 판매 제품의 90~95%를 PB 제품으로 진열, 중저가 시장을 공략해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약 200개 매장 보유하고 약 10%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 PB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소비자들의 위축된 심리와 맞물려 PB 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Aldi」社 등에서 판매한 PB 제품이 일반 브랜드 제품보다 판매증가율이 높았음
- 금융위기 때 가격이 저렴해 PB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제품의 질에도 만족을 느껴 경기회복 후에도 PB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가 일어남
- 2011년 2월 「Nielson」 보고서에 따르면 PB 제품에 대한 1인당 소비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PB 제품 소비자층 보면 우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구매제품의 30% 이상을 PB 제품으로 구매하며, 그 외 젊은 독신자가 약 전체 PB 제품 구매자의 5%, 자녀가 없는 결혼한 커플이 5%, 고소득층이 15% 차지함

□ PB 제품이 주로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면서 중국산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나 제품의 품질 또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한국제품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주요 관심 품목은 식품류, 육아용품, 미용용품임

□ 시사점

- 「Robobank」는 식료품 분야의 PB 제품 비중이 2025년까지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PB 제품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임
- 호주의 PB 제품은 현지 생산 제품을 우선 취급하나 대부분 중국 등 아시아에서 수입한 상품임
- 현지 PB 제품 공급자들은 PBMA(Private Label Manufacturers Association)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

V 호주 통관 정보

1. 관세 현황

- 꼬막통조림의 HS CODE는 「1605.56.050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클램, 새조개 및 arkshells」 으로 분류되며 기본 세율은 0%로 조사됨
- 꼬막다시다의 HS CODE는 「2103.90.0017 양념과 그 대신의 조제품 ; 혼합 조미료 ; 겨자의 분·조분과 조제한 겨자 ; 혼합 조미료」 으로 분류되며 기본 세율은 0%로 조사됨
- 관세
 - 호주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관세율은 상품의 종류나 원산지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음
 - 관세청의 수입 신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입업체에게 맡겨져 있으며, 수입업체는 자체적으로 수입품목을 관세율 품목 목록에 맞추어 정확하게 분류해야 함
 - 또한 수입업자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수입품목 신고 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수입자의 의무 지불 요금은 관세 정률의 상품 분류법 1995에 의해 결정되며, 몇 가지 상황에서는 추가 요금이 부가되는 반덤핑 및 상계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호주에서 특혜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음
 - 뉴질랜드 (ANZCERTA)
 - 싱가포르 (SAFTA)
 - 미국 (AUSFTA)
 - 태국 (TAFTA)
 - 칠레 (ACI-FTA)
 - 아세안-뉴질랜드
 - 캐나다 (CANATA)
 - 태평양 지역 (SPARTECA)

■ 파푸아뉴기니 (PATCRA, 일방적 특혜 공여)

- 이밖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도 있음

□ 원산지 규정에 의해 한국 제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 또는 DCT 관세율이 적용됨

□ 호주는 운임(해상, 항공) 및 보험료를 포함 하지 않는 FOB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다시 관세가 부과된 제품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를 부과함

□ 세관은 수입 물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호주국세청(ATO)」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품 및 서비스 세금 (GST)
- 럭셔리 자동차 세금 (LCT)
- 와인 동등화 세금 (WET)

□ 모든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10% 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es)가 부과 되는데,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 기준임. 납부한 부가 가치세는 향후 관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음

2. 통관 거부사례

□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 : 냉동 바지락(Frozen short necked clam)

구분	내용
통관거부일자	2011년 7월 22일
제조사	한국
거부 사유	- 거부 유형: 미생물 - 관련 규정: 1.6.1 - 거부 사유 · 대장균 허용치 초과 검출(검사결과: 8, <2, <2, <2, <2MPN/g)
기타 정보	- 호주·뉴질랜드 식품 표준 1.6.1 : 미생물 제한 · 가리비를 제외한 껍질이 있는 연체동물, 조개류에 대장균은 2.3MPN/g을 초과해서는 안 됨

3. 통관 유의사항 및 절차

□ 개요

-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며, 과거에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 서류 미비, 항만 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된 물품들의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하며,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추후 세무 조사 등을 대비하여 수입 절차 이행 후에라도 수입된 날짜로부터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음
- 수입 신고는 전 과정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검역에 관련이 없는 물품들의 98%가 Green Line으로 분류되며, 그 밖의 검사 과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Red Line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침
- 구체적인 검사 내용은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소재하고 있는 호주 관세청에서 폭넓게 연결된 최신 컴퓨터 데이터망(Compile-System)을 통하여 검사의 체계적인 아웃라인이 잡히게 되며, 이 컴퓨터 시스템은 수입된 품목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함
- 관련 서류 신고 시 Electronic Entry에 A\$30, Manual Entry에 A\$50가량이 요구되며,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A\$2,000(약 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제출 서류와 절차

- 제출 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본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ountry of Origin)

- 기본적인 절차

- 선적 및 선적 서류 송부
- 도착 통보(Arrival Notice)
 - Shipping Company: 선박 도착 일시
 - Bank: B/L 원본 및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도착 통보)
- 통관 서류 제출(Fax /Courier) - Customs Agency
- 품목별 상품 분류(Hs Code) - Tariff Classification
- 제세 산출
 - 관세(Duty): FOB x Duty Rate
 - Goods & Service Tax(GST, 일종의 부가가치세): 관세 부과후의 금액 x 10%
- Customs Entry(세관 신고 - Customs Computer Terminal Compile 시스템)
 - Nature 10: Wharf 에서 통관
 - Nature 20: Wharf -> Bond
 - Nature 30: Bond -> 통관

□ 제세 납부

- 통관 수속과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제세

- Duty
- Goods & Service Tax(GST)
- Overseas/Air Freight
- B.S.R.A. & D/O/ITF & IDF
- Custom Computer Terminal 사용료
- Owner Code Application Fee
- Supplier Code Application Fee

-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Service Charge는 1주일 내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Customs Agent's Fee/Professional Attendance Fee
- Cartage to Warehouse Fee(필요한 경우)
- Unpacking Fee(필요한 경우)
- Cartage

- 모든 서류들은 알아보기 쉽게 명시/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수입된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물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소 15시간(공휴일 제외)이 소요됨

4. 원산지 규정

- 수입된 모든 품목들에는 원산지 규정(ROO)은 관세, 수입 할당, 반덤핑, 산계 관세, 라벨링 문제 등의 이유로 필요하게 되는데, 호주는 1995년에 체결된 WTO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고 있음
- WTO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빠른 처리와 여러 혜택이 있으며, 특혜 관세의 적용 여부가 결정됨
- 일반 관세(Normal Tariff)보다 저속 특혜 관세(Preferential Tariff) 적용 받기위한 원산지 규정이 정해져 있고, 각각의 협정이나 국내법에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함
 - 나라에서 100% 생산되는 익지 않는 재료, 광석, 농림 수산물 등
 - 원산지 재료만으로 가공된 것
 - 비영리 출생지 원재료 부품을 사용하여 가공되며, 부가 가치 기준, 관세 분류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
-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Declarations of Origin)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수입 시)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를 포함한 특혜 관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901년 관세법(Customs Act 1901)의 규정의 협정에 따른 효과적인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해야함
 - 수입 통관 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지만,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시해야함
 -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무역 상대국 양쪽에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함
 - 1940년 연간매출업무(수입)규칙(Commerce (Imports) Regulation 1940)의 대상 품목을 수입할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원산지 정보가 올바른지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선언서를 준비하고 있어야함

□ 원산지 규정에 따른 문의는 「Director Origin Australian Customs Service」 기관에서 가능함

기관명	Director Origin Australian Customs Service
주소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Australia
Fax	02-6275-6377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au -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좌측 메뉴에서 'import/export'를 클릭, 'Free trade agreements (ROO)'을 선택

VI 호주 검역 정보

- 컴퓨터에 의한 검사와 검역 직원에 의한 검사로 나뉘며, 제품 및 컨테이너와 팔레트에 대한 훈증처리 여부가 주로 체크됨
- Wooden 패키징 시는 반드시 방역 또는 열처리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패키징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피(Bark)가 제거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함
-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호주의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수입제품과 현지 생산되는 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됨
- 동식물, 의약품 등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수입은 사전 수입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으나 자동차는 사전 수입 허가를 얻어야 함
-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호주에 수입되기 전(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입 허가를 신청할 때 수입상은 수입 대상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관은 관련 부처와의 상의를 거친 후 수입의 가능 여부를 결정
- 검역 관련 부처(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입 허가 신청 품목에 대한 Risk Analysis Management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특정 품목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
- 호주로 수입된 식품의 공중 위생검역(즉, 동물 및 식물 건강)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요구 사항은 각각 다름
 - 식품의 수입 통관은 「호주검역당국(AQIS)」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식품검사체계(IFIS)에 따라 조정됨
 -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음식은 우선적으로 검역 심사와 수입음식관리법률(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의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함
 - 해당 식품의 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출시를 허가 받기 위해 호주검역당국에 방문해야

하며, 위험 카테고리의 식품의 호주 반입 여부의 기준은 생산자의 과거 기록에 기초하여 검사 받을 필요가 있음

- 수입 식품은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위원회(ANZFSC)」의 요구조건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수입업자의 법적인 책임임

□ 호주검역당국 검사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위원회 요구 조건에 대하여 음식을 검사하는데, 검사관들은 육안 검사 및 라벨링 일치와 관련된 모든 검사를 시행함

- 육안 검사는 필요에 따라 패키지를 열고, 식품의 오염 여부와 포장 결함 등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사하는 것이며, 조사관들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음

- 라벨이 영문으로 되어있는지의 여부
- 정확한 무역에 대한 설명(trade description)이 있는지의 여부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 원산지 표기 여부
- batch/lot codes 표기 여부
- 날짜 표기(형식에 맞게) 여부
- 순중량, 내용물 표기 여부
- 성분 표기 여부(해당되는 경우)

□ 호주검역당국은 수입통관을 불허하기 보다는 중대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허용할 수 있음

□ 호주검역당국은 수입통관을 불허하기 보다는 중대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허용할 수 있음. 사소한 결함은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약 아래 통관이 허용되나 반복되는 결함문제는 보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Canned Meat Product(캔 처리된 고기 식품)

- 생선류가 아닌 육류를 5%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수입 시 사전허가 필요
- AQIS의 승인을 받은 가공 공장에서 제조된 상품만 수입 가능
- 육류는 열처리 되어야 하며, 공인된 밀폐 용기에 담아야 함
- 도살된 가축은 도살 전후에 공인된 수의 공무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함
- 매 선적 분마다 공인된 수의사가 발행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
- 소고기 성분의 맛이 함유된 라면 등 면류의 제품은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함
 - Poultry(가금류)
 - 조리된 통조림 제품(cooked canned poultry)은 특별한 가공 조건을 충족해야 함
 - Cooked uncanned poultry의 제품은 뉴질랜드에서만 수입 가능
 - Dairy Products(유가공 식품)
 - 모든 유가공 및 유함유 제품을 10% 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AQI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국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음
 - Category1: Foot and Mouth Disease(FMD)가 없는 국가
 - Category2: FMD의 예방 접종을 하고, 지난 24개월 동안 FMD의 발병이 없는 국가
 - Category3: 기타 국가
 - Fish and Fish Products (어류 및 어류 식품)
 - 연어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검역 상에 별다른 큰 문제 없음
 - Eggs and Egg Product(달걀 및 달걀 제품) >
 - 계란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으며, 계란 함유량이 10% 이상 인 경우에는 AQIS의 허가 하에 수입이 가능
 - Fresh Fruits and Vegetable(신선한 과일 및 채소)
 - 수입 시 사전 허가 필요
 - Frozen Fruit and Vegetable(냉동과일 및 채소)
 - 18' C상태로 운송된 제품만 수입 가능
 -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 검역청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

- Australian Quarantine & Inspection Service
- <http://www.daffa.gov.au/aqis>

□ 위험 분류 식품

-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FSANZ)은 대중의 건강에 중간 ~ 고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위험 카테고리 분류함.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은 호주검역당국에 위험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통지하고, 해당 식품의 검사 빈도와 테스트 방법을 결정함
- 위험 식품은 '테스트 및 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테스트의 결과가 알려지기 전까지 판매용으로 출시되지 않음
- 검사에 실패한 위험 식품 화물은 호주 식품 표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음식은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한 재 수출 또는 폐기 처분을 받음
- 위험 식품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테스트에 관련된 최신 공지를 포함하는 최신 호주검역당국의 수입 식품의 통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 www.daff.gov.au/aqis/import/food/notices

□ 감시 카테고리 식품

- 위험 식품 외에 인간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해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정되는 식품은 호주의 식품 규격에 준거하여 화물의 5%가 호주검역당국의 검사를 받게 됨. 이러한 음식은 '랜덤 모니터링 식품' 이라고 하며, 분석 항목은 해당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이나 수용 수준, 미생물학적 오염 물질, 천연 독물, 금속 오염, 항생제 등임
- 임의 감시 식품 낮은 위험도에 속한다고 판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테스트 및 통관 허가' 상태에 있으며, 테스트의 결과가 수신되기 전에 판매 배포할 수 있음
- 감시 식품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테스트에 관련된 최신 공지를 포함하는 최신 호주검역당국의 수입 식품의 통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 www.daff.gov.au/aqis/import/food/notices

□ 보류 명령(Holding Orders)

-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활성 또는 랜덤 감시 식품의 경우에는 보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보류 명령은 식품의 검사 카테고리가 위험 상태로 단계 상승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호주의 요구 사항 준수를 확인하기 전까지 문제의 업체로부터 미래의 모든 식품 출하가 자동으로 보류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류 명령 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 www.daff.gov.au/aqis/import/food/holding-or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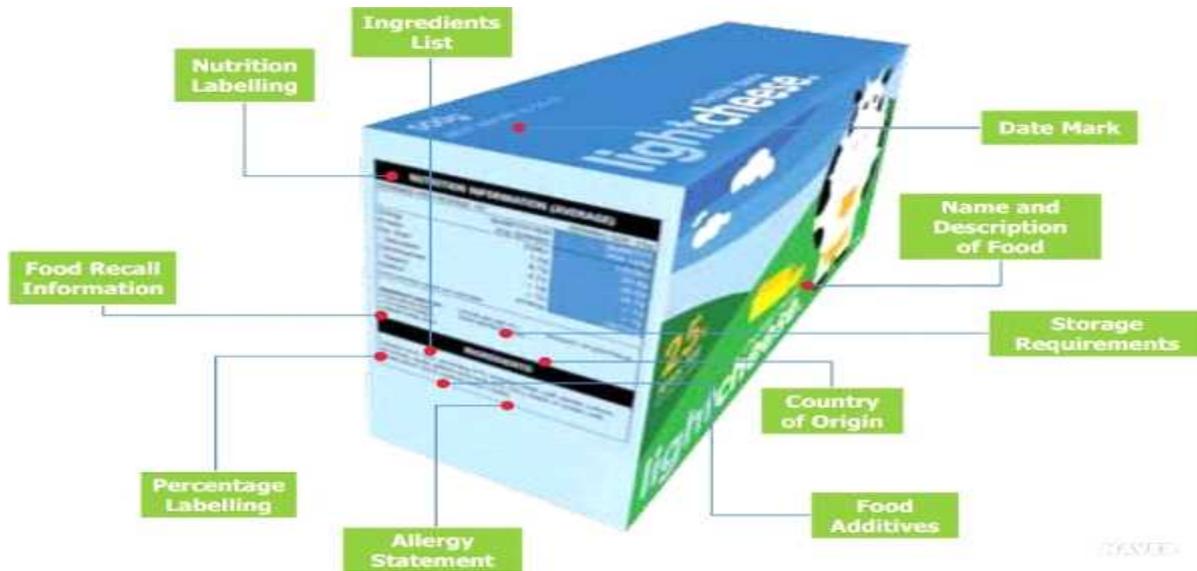
□ 수입 금지 품목

-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AQIS의 Risk Analysis Management 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짐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미국 및 오렌지를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계란 수입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여부에 따라 수입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 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VII 호주 라벨링 정보

- 호주는 검역절차가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식품 라벨링은 공급처와 유통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인 소매용 가공식품의 라벨링 상 필수 표기항목은 식품 품질 기준인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 New Zealand: <http://www.foodstandards.gov.au>)」에 의거해 10가지 필수표기 사항을 지정하고 있음

<호주 식품 라벨링 예시>



순번	필수항목	상세정보
1	제품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은 사실적인 성분을 근거로 명시해야 함. - 제품 사진에 바나나가 있다면 제품 안에 반드시 바나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만약 바나나가 아닌 향만을 함유하고 있다면 'Banana-Flavoured'라고 표기해야 함
2	주요 원료 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에 포함된 원료는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부터 나열 - 복합된 재료가 소량(5% 미만)일 경우 단지 혼합된 재료만이 명시됨. 예로 토마토소스는 그대로 명시함 - 단, 방부제와 같이 복합재료 안에서 특정 기능을 하는 첨가제는 명칭이나 고유번호로 따로 명시해야 함 <p>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a4a8a; color: white; margin: 0;">INGREDIENTS</p> <p style="margin: 0;">Whole milk, concentrated skim milk, sugar, strawberries (9%), gelatine, culture, thickener (1442).</p> </div>
3	영양 성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영양성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1회 분 섭취량과 100g(액체는 100ml)을 기준으로 각각 명시되어야 함

		<p>- 1회분 섭취량을 통해 자신이 섭취한 영양성분을 계산할 수 있으며, 100g당 영양성분을 통해 타 제품과의 비교가 용이함</p> <p>예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NUTRITION INFORMATION</th> </tr> <tr> <th colspan="2">SERVINGS PER PACKAGE: 3</th> <th colspan="2">SERVING SIZE: 150g</th> </tr> <tr> <th colspan="2">QUANTITY PER SERVING</th> <th colspan="2">QUANTITY PER 100g</th> </tr> </thead> <tbody> <tr> <td>Energy</td> <td>608kJ</td> <td></td> <td>405kJ</td> </tr> <tr> <td>Protein</td> <td>4.2g</td> <td></td> <td>2.8g</td> </tr> <tr> <td>Fat, Total</td> <td>7.4g</td> <td></td> <td>4.9g</td> </tr> <tr> <td>- Saturated</td> <td>4.5g</td> <td></td> <td>3.0g</td> </tr> <tr> <td>Carbohydrate</td> <td>18.6g</td> <td></td> <td>12.4g</td> </tr> <tr> <td>- Sugars</td> <td>18.6g</td> <td></td> <td>12.4g</td> </tr> <tr> <td>Sodium</td> <td>90mg</td> <td></td> <td>60mg</td> </tr> </tbody> </table> <p>- "low in fat", "high in fibre", "reduced sugar"과 같이 특정 영양정보에 대한 명시는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n New Zealand)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기입 가능</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w Fat foods = 3g of fat or less per 100g • Reduced Fat foods = 25% less fat than the regular product and at least 3g or less fat per 100g • Low Salt foods = 120mg of sodium or less per 100g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S PER PACKAGE: 3		SERVING SIZE: 150g		QUANTITY PER SERVING		QUANTITY PER 100g		Energy	608kJ		405kJ	Protein	4.2g		2.8g	Fat, Total	7.4g		4.9g	- Saturated	4.5g		3.0g	Carbohydrate	18.6g		12.4g	- Sugars	18.6g		12.4g	Sodium	90mg		60mg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S PER PACKAGE: 3		SERVING SIZE: 150g																																								
QUANTITY PER SERVING		QUANTITY PER 100g																																								
Energy	608kJ		405kJ																																							
Protein	4.2g		2.8g																																							
Fat, Total	7.4g		4.9g																																							
- Saturated	4.5g		3.0g																																							
Carbohydrate	18.6g		12.4g																																							
- Sugars	18.6g		12.4g																																							
Sodium	90mg		60mg																																							
4	식품 첨가제	<p>- 첨가제는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의 맛 첨가, 안전한 보존, 사용 용이 등을 위해 사용되고 안전검사를 통한 FSANZ 승인이 필요함</p>																																								
5	경고·주의사항	<p>- 알레르기 및 천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8개 원료가 포함됐을 경우, 극히 소량이라도 꼭 명시해야 함</p> <p>- 갑각류, 계란, 생선류, 우유, 땅콩, 콩류, 각과류, 참깨</p> <p>- 수확·보존·가공 단계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may contain trace of nuts'라는 코멘트를 자발적으로 기입할 수 있음</p> <p>- 그 외 키니네(Quinine), 카페인(Caffeine) 등과 같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은 꼭 따로 명시해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을 위해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할 것을 권유</p>																																								
6	유통기한	<p>- 'USE-BY DATE'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표기일 전에 섭취해야 함</p> <p>- 'BEST BEFORE DATE'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손상되지 않은 한 표기 일이 지나도 섭취 가능하나 빠른 시일에 소모할 것을 권유</p>																																								
7	저장 방법	<p>- 치명적인 박테리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없애기 위해 제품 보관방법은 꼭 정확하게 명시해야 함</p> <p>예시) '5°C 이하 냉장보관(keep refrigerated at or below 5°C)'</p>																																								
8	원산지	<p>- 원산지 표기는 최종 생산된 국가나 비중에 따라 구분됨</p> <p>- 'Product of Korea', 'Produced in Korea', 'Produce of Korea': 모든 원료 및 생산이 모두 한국에서 진행된 경우</p> <p>- 'Made in Korea', 'Manufactured in Korea': 최소 완제품 50% 이상의 생산비가 한국에서 발생한 경우</p>																																								
9	리콜 정보	<p>- 리콜 서비스를 위해 제품 생산업체 혹은 공급업체의 사업명과 주소를 꼭 명시해야 함</p>																																								
10	고유 인식 번호	<p>- 효율적인 리콜 진행을 위해 제품의 Lot·Batch Number(예: 수입일자·</p>																																								

	포장일자)가 같이 표기돼야 함
--	------------------

□ 일반적 라벨링 표준

-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소매용 식품포장이나 케이터링 목적의 식품포장은 다음의 핵심정보를 포함해야 함
 - 제품명 또는 제품명이 없을 경우 식품의 본질을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이름
 - Lot identification
 - 호주 또는 공급 업체 뉴질랜드의 이름과 회사 주소
 - 필수 경고 권고문 선언 표준 1.2.3에 지정된 다른 경고 및 ANZFSCL 다른 위치에서 지정된 권고문
 - 재료 목록
 - 날짜 표시
 - 영양 정보
 - 백분율 라벨링(특징 성분과 구성요소)
 - 공중 보건과 안전상의 이유로,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보관 식품의 적절한 지침을 필요로 하는 사용과 보존을 위한 안내문
 - 뉴질랜드의 식품 이외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원산지 기재 필요

VIII 호주 바이어 정보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GTA : <http://www.gtis.com/gta/>
- 관세청 : www.customs.go.kr/
- 세계 HS 정보시스템 : <http://www.customs.go.kr/>
- 호주식품기준청 : <http://www.foodstandards.gov.au>
- WOOLWORTHS(호주 온라인 쇼핑몰) : <http://www2.woolworthsonline.com.au/>
- Deli2home(호주 식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 : <http://www.deli2home.com/>
- COLES(호주 온라인 쇼핑몰): <http://shop.coles.com.au/online/national/>